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691

발의연월일: 2023. 1. 30.

발 의 자:이병훈·이개호·정성호

이상헌 • 윤재갑 • 홍익표

김주영 · 양경숙 · 오영환

김윤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음.

「공직선거법」 상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상으로서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유사한 성격의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, 체 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.

이에,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(안 제43조의2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2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을 "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의2(체육단체의 장의 겸직	제43조의2(체육단체의 장의 겸직
금지)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	금지)
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	
(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	
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)의 장	
은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또는 지	<u>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</u> -
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	
없다.	,